

“8시 햇빛 한번 들면 끝”...35m 앞 20층 아파트 신축 ‘분통’

“집 안도 훤히 다 보여...온종일 커튼 치고 살아야” 입주 11개월만에 청천벽력...“구청 상식 밖의 허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전 8시에 햇빛이 잠깐 들고 하루종일 빛이 아예 안들어온다고 하는데...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광주 서구 농성동 S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59)는 한 달 전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사는 S아파트 바로 앞에 20층짜리 G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소식이었다.
문제는 두 아파트 사이 간격이 불과 35m밖에 되지 않고 ‘G’로

S아파트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건물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S아파트는 20~26층으로 842세대가 입주해 4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신축 G아파트는 20층 높이 2동이 건축돼 1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는 “말이 35m이지 실제 마주 보는 아파트 형태상 집 안이 훤히 다 보인다. 그 정도면 온종일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까운 것도 문제지만 한 아파트를

완전히 가리는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걸 지자체에서 승인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30년 만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구해서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된다는 부푼 꿈에 있는데...이 상황이 정말 청천벽력 같습니다”며 호소했다.
문제는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아파트가 지어지면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시물레이션 업체 관계자가 아파트 입주 상황을 가상 재현해보니 아침 8시에 잠깐 햇빛이 비치고 종일 빛이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한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

떻게 사나. 지금도 옆에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짓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벌써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온다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뻔히 피해가 예상되지만 주민들 대부분 쉽게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9월 신축 아파트인 이 S아파트에 처음 입주해 1년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전세 입주자들은 쉽게 집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년도 안 살고 집을 처분하면 세금 문제 등도 복잡해 다들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 S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4일 광주 서구청 앞에서 G아파트 신축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독자제공)

그가 무엇보다 분노하는 건 4000여명 주민들의 피해가 볼 보듯 뻔하지만, 서구가 ‘위법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유나 기자



“세상 어디에도 식용견은 없다” 비건(Vegan)세상을 위한 시민모임(비시모)회원들이 초복을 맞아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류 보양식 대신 채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아냐”...이재명 살아났다

반대의견 5명 “불리한 사실 숨겨 의도적 사실 왜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관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월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회피하고 방어하는 수준 혹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여름휴가철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많아

공정위, 지난 3년간 사고 증가 추세

7~8월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양지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 ‘10세 미만’, 장소별로는 캠핑장,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소비자원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일상생활과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소비자원이 접수하는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휴양지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17년 318건에서 지난해 455건으

로 늘었다.
휴양지 안전사고 중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38.8%가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호텔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바다 25.6%, 펜션 19.4%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휴양지 외에 여름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